

부속서 II

엘살바도르의 유보목록

주해

1. 이 부속서의 엘살바도르 유보목록은 제9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 - 가. 제9.3조(내국민 대우) 또는 제10.2조(내국민 대우)
 - 나. 제9.4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10.3조(최혜국 대우)
 - 다. 제10.5조(현지주재)
 - 라. 제9.9조(이행요건)
 - 마. 제9.10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, 또는
 - 바. 제10.4조(시장접근)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- 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 - 나. **관련의무**는 제9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 열거된 분야,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(들)를 명시한다.
 - 다. **유보내용**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. 그리고
 - 라. **기존의 조치**는, 투명성의 목적상,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.
3. 제9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,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1. 분야	우편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엘살바도르는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
2. 분야	사회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,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: 소득 보장 또는 보험, 사회 보장 또는 보험, 사회 복지, 공교육, 공공 훈련, 보건 및 보육.</p>

3. 분야	소수집단에 관한 사항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에게 권리 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4. 분야	운송서비스 육상 운송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4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육상 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5. 분야	사업서비스: 전문직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전문직서비스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¹</p>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투자관련 전문직서비스는 이 협정상의 서비스 무역의 정의에 따른 전문직 활동에 대한 국내법 준수를 배제하지 아니한다.

6. 분야	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엘살바도르는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
7. 분야	모든 분야
관련의무	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조약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²</p> <p>엘살바도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조약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가. 항공 나. 수산 다.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라. 통신서비스, 또는 마. 철도 운송</p>

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엘살바도르는 공동체법으로 인한 공동체법 규범에서 유래되거나 중미통합체제(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)의 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이 채택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.

8. 분야	그 밖의 사업 서비스: 사설 경비 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사설 경비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9. 분야	커뮤니케이션서비스: 통신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 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10. 분야	유통서비스: 석유 제품
관련의무	이행요건(제9.9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석유 제품의 유통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11. 분야	보건 관련 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보건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12. 분야	제약산업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약국,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의약품, 약품 및 화장품의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와 같은 제약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13. 분야	에너지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: 전력 및 가스 산업의 발전, 송전 및 배전.</p>

14. 분야	교육 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: 초등, 중등,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서비스.</p>

15. 분야	시청각 서비스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시장 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시청각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: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, 영화 상영 서비스 및 음향 녹음.</p>

16. 분야	창조 산업: 창조적 콘텐츠 생산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시장 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다음과 같은 창조적 콘텐츠의 생산을 의미하는 창조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: 음악, 연극, 문학, 사진, 애니메이션,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(온라인 포함) 및 소프트웨어 개발.</p>

17. 분야	주류 제조
관련의무	이행요건(제9.9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18. 분야	광업 및 채석업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시장접근(제10.4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엘살바도르는 광업 및 채석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